

규정 / REGULATION MONTGOMERY COUNTY PUBLIC SCHOOLS

관련 항목: ISB-RA
책임 맡은 사무실: Chief Academic Officer

홈스쿨링/가정 내 교습(Home Instruction)

I. 목적

지역 공립 교육구를 위한 요건을 설명하여 가정에서의 교습(홈스쿨링)에 관한 Maryland 법 적용 절차를 책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II. 배경

Maryland 주 법에서 예외를 제공하지 않는 한, 5 세 이상 18 세 미만의 아동의 법적 후견인이나 아동을 관리 보호하는 사람은 아동을 학교에 출석하게 하거나 학사기간 동안 공립 학교가 같은 나이의 아동에게 일반적으로 제공하는 것과 같은 정기적이고 철저한 교육을 받도록 해야 합니다.

Montgomery County Public Schools(MCPS) 교육감/대리인은 Montgomery 카운티의 홈스쿨링/가정 내 교습 프로그램(home instruction program)의 학생이 같은 나이의 공립 학교에 다니는 아동이 일반적으로 받는 것과 같은 교육을 최소한 정기적으로 받고 있는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III. 행정절차

A. 부모님/후견인을 위한 정보

MCPS Office of the Chief Academic Officer 는 자녀에게 홈스쿨링/가정 내 교습(Home Instruction)을 제공하고 싶은 부모/후견인을 위해 정보를 주는 자료를 제공합니다. 이 자료에는 MCPS 홈스쿨링/가정 내 교습(Home Instruction) 슈퍼바이저/대리인 연락처, 해당 Maryland 법과 규정, MCPS 가 요구하는 양식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B. 알림 요건과 승인 동의

1. 학부모/후견인은 홈스쿨링/가정 내 교습(Home Instruction) 프로그램을 시작하기 최소 15 일 전에 MCPS Form 270-34, *Home Instruction Notification(비밀유지)*을 MCPS Home Instruction 수퍼바이저/대리인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학부모/후견인은 아래 sections III.D 에 명시된 바와 같이 제공하는 교습을 MCPS 가 감독과 검토하는 것에 또는 아래 section III.C 에 명시한 바와 같이 Maryland State Department of Education(MSDE)에 등록된 비공립학교나 기관이 감독과 검토하는 것에 동의해야 합니다.
 2. 그 후, 매해, 학부모/후견인은 학생이 비공립학교 또는 MSDE 에 등록된 기관으로부터 감독과 관리를 제공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MCPS 와 홈스쿨링/가정 내 교습(Home Instruction)을 지속하는 것을 서면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MCPS Home Instruction 수퍼바이저/대리인은 MCPS Form 270-36, *Annual Notification to Continue Home Instruction* 을 MCPS 가 감독하는 모든 홈스쿨링/가정 내 교습(Home Instruction) 프로그램 학부모/후견인에게 우편으로 보냅니다.
 3. 학부모/후견인은 학기 중 학생의 홈스쿨링/가정 내 교습(Home Instruction) 프로그램에 변경사항이 생긴 경우, MCPS Home Instruction 수퍼바이저/대리인 또는 등록된 감독 학교 또는 기관에 서면으로 이를 알려야 합니다.
 4. 학부모/후견인은 아래에 있는 section III.E 에 명시된 바와 같이 학생이 공립학교 또는 비공립학교에 등록하고 있어야 한다는 규정에 동의해야 합니다.
 5. MCPS 는 또한 학부모/후견인에게 다음 사항을 알려야 합니다:
 - a) 학생은 MCPS 의 일반 스케줄의 기준평가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선택의 권리가 있습니다.
 - b) Section III.G.에 명시된 바와 같이 자주 묻는 다른 질문
- C. 등록된 비공립학교 또는 기관 감독하의 홈스쿨링/가정 내 교습(Home Instruction)
- 학부모/후견인은 COMAR §13A.10.01.05.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MSDE 에 등록된 비공립학교 또는 기관의 감독하에서 자녀에게 홈스쿨링 교습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1. 위에 요구된 바와 같이, 학부모/후견인은 MCPS Form 270-34 양식을 교습 시작 최소한 15 일 전에 제출해야 합니다. 위에 명시된 바와 같이 등록된 비공립학교 또는 기관의 감독을 받는 학생은 아래의 section III.D. 요건 대상이 아닙니다.
2. 등록된 비공립학교 또는 기관은 다음을 해야 합니다-
 - a) 기관의 감독하에 지속적으로 홈스쿨링/가정 내 교습(Home Instruction)을 받는 학생의 신분을 MCPS 에 확인시켜야 합니다.
 - b) 새롭게 감독 대상이 된 학생의 신분을 MCPS 에 알려야 합니다.
 - c) 더 이상 감독하지 않는 학생의 신분 또는 학사연도 중 홈스쿨링/가정 내 교습(Home Instruction)을 감독한 학생의 상태에 변경사항이 생긴 경우, 이를 MCPS 에 제공해야 합니다.

D. MCPS 의 감독하에 있는 학생을 위한 포트폴리오 검토

1. MCPS 의 감독하에 홈스쿨링/가정 내 교습(Home Instruction)을 받는 학생의 학부모/후견인은 교육감 지정 대리인이 교육자료의 포트폴리오를 검토하고 학생이 Maryland 법에 따라 정기적으로 완전한 교습을 받도록 하기 위해, 교육감 지정 대리인이 교습 프로그램에 관한 토론을 승인해야 합니다.
 - a) 학부모/후견인은 정기적으로 완전한 교습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기 위해 교재 포트폴리오를 관리 유지합니다.
 - b) 검토와/또는 심의는 학교 교육감 지정 대리인과 학부모/후견인이 서로 동의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이루어집니다.
 - c) 학사연도 중 이와 같은 토론이 최대 3 회 있을 수 있습니다.
2. 법을 준수하는 교습을 보여 주는 포트폴리오는 학부모/후견인이 영어, 수학, 과학, 사회탐구, 미술, 음악, 보건, 체육을 날짜에 적절한 교습 교재, 읽기 교재, 학생의 글 샘플, 워크시트, 워크북, 창의적 교재/자료, 각 과목의 평가 등의 자료를 포함하여 정기적으로 철저한 교습을 제공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3. 학부모/후견인은 학생이 이수한 과목의 교재 포트폴리오를 대신하여 학기 말에 인가 받은 대학이나 인가 받지 못한 대학의 성적표나 성적증명서의 사본을 MCPS 에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4. 홈스쿨링/가정 내 교습(Home Instruction) 프로그램 검토의 보고서는 는 교육감 지정 대리인이 MCPS Form 270-35, *Review of Home Instruction Program* 를 작성하고 MCPS 홈스쿨링 교습 수퍼바이저/대리인에게 학생이 학사기간동안 공립학교에서 같은 나이의 학생이 일반적으로 배우는 과목에서 적절한 교재를 사용하여 최소한의 정규 교습을 받고 있는지 여부를 검토한 결과를 제출합니다.
5. 만약 MCPS 홈스쿨링(MCPS Home Instruction) 수퍼바이저/대리인이 포트폴리오 검토와 학부모/후견인과의 대화를 통해 교습이 Maryland 법에 일치하지 않으며 학생이 교습을 정기적으로 받고 있지 않다고 판단할 경우, MCPS 홈스쿨링(MCPS Home Instruction) 수퍼바이저/대리인은 프로그램의 부족한 부분을 서면으로 학부모/후견인에게 알려야 합니다.
6. 프로그램의 부족한 부분을 서면으로 받고 30 일 이내에 학부모/후견인은 MCPS Home Instruction 수퍼바이저/대리인에게 부족한 부분을 수정하거나 수정 중에 있음을 알리는 증거를 제출해야 합니다.
7. 홈스쿨링/가정 내 교습(Home Instruction) 프로그램의 학생이 18 세가 된 이후에는 이 규정을 준수하기 위한 검토는 더 이상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E. 홈스쿨링 가정 내 교습(Home Instruction)의 중단

1. 학부모/후견인이 결정한 경우

학부모/후견인은 학사기간 중, 언제든지 MCPS Home Instruction 수퍼바이저/대리인에게 서면으로 이를 알리면서 홈스쿨링/가정 내 교습(Home Instruction)의 중단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학생은 COMAR 13A.09.09.02B(4-9)에 명시된 바와 같이 즉시 인가 받은 공립학교 또는 비공립학교에 등록해야 합니다.

2. MCPS 가 결정한 경우

만약 MCPS 홈스쿨링/가정 내 교습(Home Instruction) 수퍼바이저/대리인이 부족한 점을 수정하기에 충분한 계획이 없다고 여기거나 부족한 점이 수정되지 않다고 판단할 경우, 학부모/후견인은 COMAR 13A.09.09.02B (4-9)에 규정된 바에 따라 부모는 자녀를 승인된 공립학교 또는 비공립학교에 즉시 등록해야 합니다.

3. MCPS 에의 배치

학교장/대리인은 MCPS Home Instruction 수퍼바이저/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요청을 받을 경우, 새 등록자인 학생에게 적절한 학년을 결정합니다.

- a) 9 학년-12 학년에 배치할 경우, 학교장/대리인은 졸업을 위해 취득한 학점을 판단해야 합니다.
- b) 해당 사항이 있다면 학교장/대리인의 결정에 따라 학생의 학년 배치와 취득 학점 등을 결정하기 위해 적절한 평가시험과 학생과의 인터뷰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F. 스탠더드 평가시험(standardized testing)에의 자원 참가

1. 자녀가 스탠더드 시험에 참가할 MCPS Form 270-34, *Home Instruction Notification (confidential)*에 명시된 학부모/후견인은 카운티 전체의 시험 일정표를 제공 받습니다. 학교장/대리인은 특정 시험 장소에 관한 정보를 위해 학교장/대리인에게 연락을 해야 합니다.
2. 시험점수는 학부모/후견인에게 Office of Shared Accountability 의 직원이 MCPS 학생 파일을 위해 사본과 함께 직접 제공합니다.

G. 졸업장, 과외활동, MCPS 교과과정, 특수교육 서비스를 위한 평가

1. 홈스쿨링/가정 내 교습(Home Instruction)에서 전학 와서 MCPS 에 등록하는 학생은 모든 MCPS 졸업 요건을 충족해야만 Maryland 고등학교 졸업장(High School Diploma)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MCPS 고등학교 졸업 요건은 MCPS Regulation ISB-RA, *High School Graduation Requirements* 에서 볼 수 있습니다.

2. 학생은 홈스쿨링/가정 내 교습(Home Instruction)을 받는 학생은 MCPS 고등학교 운동경기나 과외활동에 참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The Maryland Public Secondary Schools Athletic Association 은 홈스쿨링/가정 내 교습(Home Instruction)을 받는 학생에게 비공립학교에서의 운동 경기 프로그램에 대한 참여를 비공립학교의 제량에 따라 제한적인 예외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3. MCPS 교과과정과 타 MCPS 교습 자료를 홈스쿨링/가정 내 교습(Home Instruction)에서 사용하도록 제공하지 않습니다.
4. 홈스쿨링/가정 내 교습(Home Instruction)을 받는 학생의 학부모/후견인은 Child Find 서비스 장애인 교육법(Individuals with Disabilities Education Act)의 절차인 Child Find 서비스의 일부인 특수교육 서비스 해당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평가를 MCPS 에 요청할 권리가 있습니다.

H. 기록 유지와 관리

MCPS 홈스쿨링/가정 내 교습(Home Instruction) 슈퍼바이저/대리인은 홈스쿨링 참여 학생의 학생 파일을 유지해야 하며 이에에는 다음이 그러나 이에 제한하지 않고 포함됩니다:

1. MCPS Form 270-34, *Home Instruction Notification (비밀유지)*
2. 가능하거나 적절한 경우, 표준 MCPS 또는 주 평가시험 점수
3. MCPS 가 감독하는 학생의 경우, MCPS Form 270-35, *Review of Home Instruction Program*
4. MCPS Form 270-36, *Annual Notification to Continue Home Instruction (비밀유지)*, 해당할 경우.
5. 모든 동일 또는 관련 서류

관련 자료:

Annotated Code of Maryland, Education Article, §7-301; Code of Maryland Regulations (COMAR) §13A.10.01.01 et seq; §13A.09.09.02B (4-9)

규정 변경사: 새 규정 1986년 2월; revised 1987년 12월 14일 갱신, ; 1995년 7월 1일 갱신; 2005년 6월 29일 갱신; 2017년 6월 29일 갱신; 2019년 9월 5일 갱신.